



제 429국회 (정기회)
제 3차 교육위원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지원 강화 〉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909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국립대학병원 시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특례 부여	2
2. 국립대학병원의 재정 책임 원칙 근거 규정 변경	6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용갑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8. 01.
3. 회 부 일 : 2025. 8. 0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대학병원의 운영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립대학병원은 병상 가동률 하락, 의료수익 감소로 병원 운영과 시설 개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립대학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인력의 양성·공급 등에 관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립대학병원의 시설·설비의 설치 경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시 대학병원시설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9조).

Ⅲ. 검토의견

1. 국립대학병원 시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특례 부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대학병원 시설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¹⁾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8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은 대학병원 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학병원 시설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제78조에서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규정하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정하고 있음. 그리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조항에서 정한 최대한도 내에서 각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정함.

[참고 1] 관련 규정

나. 검토의견

- 국립대학병원은 국립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으로서 의대생 임상실습, 전공의 수련 등 교육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으나, 코로나19 등 지역 필수의료 위기가 가중되면서 국립대학병원에 대해 지역의료 거점 병원이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시설투자를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의료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일부 병원의 경우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인해 향후 의료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확충이나 필수의료서비스 확대가 어려운 실정임.²⁾

[국립대학병원의 용적률·사용률 현황]

(단위 : %)

구분	용적률 기준	현재 용적률	용적률 사용률
강원대병원	250.0	179.3	71.7
경북대병원	220.0	209.8	95.4
칠곡경북대병원	220.0	97.0	44.1
경상국립대병원	230.0	141.0	61.1
창원경상국립대병원	220.0	101.4	46.1
부산대병원	370.0	362.6	98.0
양산부산대병원	250.0	67.7	27.1
서울대병원	200.0	198.3	99.1
분당서울대병원 (구미동300)	250.0	113.8	45.5
분당서울대병원 (정자동217)	400.0	110.0	27.5

2) [참고 2] 용적률·건폐율 기준 완화 관련 국립대학교병원의 입장

구분	용적률 기준	현재 용적률	용적률 사용률
전남대병원	230.5	400.0	173.6
화순전남대병원	100.0	42.8	42.8
전북대병원	250.0	88.0	35.0
제주대병원	80.0	42.0	52.5
충남대병원	200.0	136.3	68.1
세종충남대병원	500.0	170.5	34.1
충북대병원	100.0	147.0	147.0
강릉원주대치과병원	52.0	48.0	92.5
경북대치과병원	272.4	272.4	100.0
부산대치과병원	-	-	-
서울대치과병원	250.0	227.7	91.1

주. 일부 병원의 경우 자료에 기입된 용적률은 병원 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며, 실제 용적률 산정 시에는 학교 부지 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함에 따라, 법적 기준을 충족함.

자료 : 교육부

□ 이에 개정안은 대학병원시설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이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인력의 양성·공급 등에 관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 국토교통부는 대학병원의 경우에도 일반 건축물과 같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용량 부족, 경관·환경 저해 등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구분하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현재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

구역 지정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폐율 최대한도의 1.5배, 용적률 2배 범위 안에서 완화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 거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나, 일부 병원의 경우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인해 시설 확충이 제한되는 바,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국립대학병원의 재정 책임 원칙 근거 규정 변경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대학병원의 사업과 운영, 시설·설비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을 위한 경비를 국가가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등) ① 국가는 -----설치, 증축·개축, 리모델링 및 병원의 운영 등을 위하여-----.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대학병원의 사업과 운영, 시설·설비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을 위한 경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까지에 따른 출연, 예산·기금의 보조 및 지원의 기준·관리-----.

나. 검토의견

- 국립대학병원은 공공의료의 공급자, 의학교육과 연구기관, 지역거점 및 상급종합병원 역할 등 학문적·사회적 책무가 강조되면서 민간병원이나 사립대학병원과는 달리 수익성을 추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전체 국립대학병원의 재정현황]³⁾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의료이익	-55,249	-21,304	1,310	-349,255	-360,081	-392,561	-445,900	-902,632
	당기순이익	-43,795	1,611	-2,472	-165,631	294,264	120,041	-277,127	-530,425

주. 2020년~2022년은 코로나 손실보상 지원으로 당기순이익 일시 증가

자료 : 교육부

- 그런데 현행법 제19조제3항에서는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족한 경우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의 시설·설비의 설치 경비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병원 이상의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거점기관으로 기능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

3) 개별 국립대학병원의 재정현황은 [참고 3] 최근 8년간 국립대학병원의 재정 현황 참조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8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①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에서 제안된 것임.

□ 국립대학병원은 최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 가동률 하락, 의료수익 감소로 병원 운영과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립대학병원들의 필수의료 진료역량 부족 등으로 이어져 이들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 다만, 현행법은 국립대학병원은 독립된 법인으로서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자율성의 전제인 책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비와 사업비 등은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예외적으로 지원규정을 두어 이를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책임성 약화에 대한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주체를 정부에서 국가로 변경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입안될 경우 향후 국립대학병원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근거가 사라진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 참고로, 현재 교육부는 현행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근거⁵⁾하여 매년 국립대학병원의 시설·설비비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2025년 기준 1,170억 5,700만원)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에 대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시설·장비 확충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⁶⁾⁷⁾

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의 의학적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은 의료 수익이 발생하는 독립법인으로서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은 자체 수익 충당이 기본 원칙이며, 국립대학병원은 공공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경영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6)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 9. (생략)

10.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7) 해당 기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2025년 3조 5,349억원의 규모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비, 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기 도입 등을 지원하고 있음.

참고 1

교육부 예산지원 현황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에서 시설·장비비 등 지원)

(단위 : 백만원)

병원명	사업명	'21	'22	'23	'24	'25
전체	교육부 지원 합계	56,840	74,635	78,833	111,369	117,057
강원대병원	소계	1,445	3,730	5,097	3,420	2,228
	신규의료장비 보강	1,000				
	노후시설 개선	325				
	차세대병원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20	1,600	990	990	
	의료용 선형가속기 도입		2,010			
	강원권역공공의료센터 건립		120	1,440	1,440	588
	영상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767	750	
	혈관조영중재시술장비 세트 교체			900		
	수술실 항온항습기 설치사업				240	
	첨단로봇수술센터 도입					1,140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500
경북대병원	소계	6,239	2,619	5,005	10,891	9,174
	임상실습동 개원준비비	6,239				
	주차환경 개선사업		119	1,505	1,716	431
	노후장비 교체사업			2,500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2,500	1,000	3,916	5,080
	의료장비 도입사업				4,250	
	칠곡분원 주차장 증축 및 진출입로 신설				1,009	1,950
	칠곡분원 노후장비 교체					1,213
	생명의학연구원 건립					500
경상국립대병원	소계	482	1,896	728	6,284	2,175
	외래진료동 석면철거 및 리모델링	482	482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1,414			
	창원분원 임상연구동 의생명연구원 건립			728	2,339	690
	노후 선형가속기 교체				3,945	
	응급 심혈관질환 대응					985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500
부산대병원	소계	1,025	2,682	0	3,861	2,925
	환경개선 및 장비도입	1,025	1,032			
	양산분원 노후 의료장비 교체		1,650			
	노후의료장비 교체사업				3,361	
	노후의료장비 교체사업					1,925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500	1,000
서울대병원	소계	9,213	10,185	7,198	16,306	39,701
	종합진료지원동 건립		1,896			
	분당서울대병원 복합진료지원동 건립	2,330			1,544	
	고객주차장 보강 및 리모델링	2,726			2,726	
	분당 신기술 의료장비 교체	2,426				
	노후헬기승강장 확충사업	1,450				
	배곧서울대병원 건립사업		7,992	5,215	2,843	25,430

병원명	사업명	'21	'22	'23	'24	'25
	본관 물류하역장 및 차량동선		89	983		
	본관 노후 병동 리모델링	281	208			
	의료장비 교체 및 구매사업				4,925	
	어린이병원 병동 리모델링				668	875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1,000	3,600	8,396
	분당서울대병원 첨단의료장비 도입					5,000
전남대 병원	소계	7,497	5,656	11,213	9,785	12,293
	의생명연구지원센터건립	634				
	노후의료장비 교체	3,600				
	차세대 통합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1,138	1,136			
	화순전남대병원 개방형 의료혁신센터 건립	1,000		5,354	4,645	
	차세대 HIS 고도화 사업	1,125	1,500	1,125		
	전문진료센터 조성사업		520	1,204	900	2,566
	첨단의료장비 보강사업			2,530	2,550	
	화순분원 디지털항암센터 건립				690	2,030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2,500	1,000	1,000	4,172
	첨단의료장비 도입					3,525
전북대 병원	소계	3,499	8,281	7,383	18,563	28,040
	군산분원건립		3,933	1,650	11,851	22,940
	본관 및 병동리모델링 및 첨단진료센터 구축	1,184				
	진료환경 개선사업		2,033	2,033		
	의료장비 현대화 및 첨단화 사업	2,315	2,315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1,000	3,600	2,400
	첨단 의료장비 보강 및 고도화			2,700		
	첨단융합 음압진료센터 구축				3,000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				112	
	노후의료장비 교체					2,700
제주대 병원	소계	5,397	5,155	0	129	3,600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871				
	임상교육훈련센터 리모델링	2,526				
	의료장비 확충		4,260			
	교육진료동 증축	2,000	895			3,100
	사이클로트론센터 도입				129	
	임상교육실습동 및 의생명연구원 건립					500
충남대 병원	소계	10,894	11,421	7,715	12,039	2,362
	충남대병원 세종분원 개원준비비	2,855				
	세종분원 부착외 장비도입	1,456				
	환자안전시설 개선	1,512	1,557	1,557		
	중환자실 확충	1,548				
	첨단의료장비구축		3,750	1,250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3,523	6,114	4,557	4,556	
	세종분원 감염병 전담 외래센터 및 교육 연구공간 확충			351	3,733	1,862
	노후의료장비 교체사업				3,750	
	임상연구 교육실습동 건립					500
충북대	소계	4,147	7,019	4,844	6,223	1,875

병원명	사업명	'21	'22	'23	'24	'25
병원	의생명진료연구동 건립		2,946	3,012		
	충북대병원 교육인재관 건립	1,293				
	충북대병원 통합로비 설치사업	1,039	1,039			
	노후의료장비 교체 및 의료장비 보강	1,815				
	노후시설 및 설비개선사업		1,034			
	선형가속기 기반 암 치료기 교체		2,000			
	의생명진료연구동 신규 장비 도입			984	1,500	
	노후전기설비 개선공사			848	2,511	
	중증 응급환자 영상치료장비 고도화				1,712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500	1,000
	미래혁신교육센터 건립					500
	임상연구동 환경개선					375
강릉 원주대 치과 병원	소계	3,000	2,025	1,500	2,100	0
	안전환경개선	1,875				
	노후 의료장비 교체	1,125	1,125			
	전산시스템 및 장비교체		900			
	교육연구지원동 건립			1,500	2,100	
경북대 치과 병원	소계	900	750	1,500	7,276	1,177
	안전환경 개선	900				
	옥외 승강기 설치		750			
	치의학 융복합센터 건립			1,500	7,276	
	장애인 편의 및 노후안전시설 개선					1,177
부산대 치과 병원	소계	3,102	2,178	900	3,600	1,800
	치의학융복합 진료센터 건립	3,102				
	필수 및 노후대체 의료장비 도입		2,178			
	구강암 및 안면외상센터 설치			900	3,600	
	노후시설 및 설비개선					1,800
서울대 치과 병원	소계	0	1,663	6,681	4,542	5,767
	시흥서울대치과병원 건립		1,663	2,147	4,542	4,274
	국민재난 진료센터 건립			4,534		
	연구동 리모델링					1,493
교육부	공공임상교수제 지원	0	9,375	19,069	6,350	3,940

참고 2

용적률·건폐율 기준 완화 관련 국립대학병원의 입장

구분	주요 내용
강원대병원	○ 용적률에 대한 여유는 있으나, 외래 및 병동 등으로 인하여 건물 증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협소한 부지 내 주차장, 차량동선, 법정조정 및 공개 공지 면적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개발 가능 대지면적이 없어 용적률에 대한 완화보다는 추가 대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
경북대병원	○ 국립대학교병원의 시설확충 및 기능 고도화를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원은 주차공간 부족, 기존 법정 면적 유지 등으로 인해 증축 가능한 공지가 없어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증축이 불가능한 실정임
부산대병원	○ 현재 용적률이 97.99%로 법정 한계치인 370%에 근접한 상황이며, 향후 의료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확충이나 필수의료서비스 확대가 어려움 ○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적 역할수행과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용적률 완화 등의 제도적 지원 필요
서울대병원	○ 본원은 1978년 건립된 본관 건물과 1985년 건립된 어린이병원 건물의 노후화 및 진료시설 부족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나 용적률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 ○ 부족한 진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교수연구실 등을 병원 외부 다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 ○ 병원 부지 내 공간 확충을 위해 용적률·건폐율 기준 완화 필요
전남대병원	○ 새병원건립 등을 위해 용적률·건폐율 기준 완화 필요
충남대병원	○ 본원은 본관, 소아동 등 주요 건축물이 지어진 지 30년이 지났으며, 옥외 주차장과 철골 주차장 2개만 활용하고 있는 상황(지하주차장 無) ○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병원 기능 강화 및 지속적인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행 용적률·건폐율 기준 완화 필요
충북대병원	○ 향후 병원 개발을 위해 추가 토지 확보, 용적률 기준 완화 등의 실질적인 지원 필요
서울대 치과병원	○ 용적률·건폐율 기준 완화 동의